

1. 개정이유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안 제51조 및 제52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에 따라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나.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수급자격 명확화(안 제115조의3)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다. 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류 간소화(안 제95조 등)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 (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한 서류 사본 1부

제5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만,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전단 중 “영 제29조제3항과 제4항”을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한”을 “대체인력 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을 “유산·사산휴가 기간이나 대체인력 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초)본을”을 “(초)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류”란 수급자격증과”를 “서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10조 중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수강증명서”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를 “청구서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

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여 폐업한 경우

제13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지위 승계에 관한 증명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13호서식, 별지 제114호서식, 별지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작성방법

- ① ~ ③란은 신청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④ ~ ⑤란은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조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될 경우만 적습니다.
- ⑥ ~ ⑧란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등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로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 ⑨ ~ ⑫란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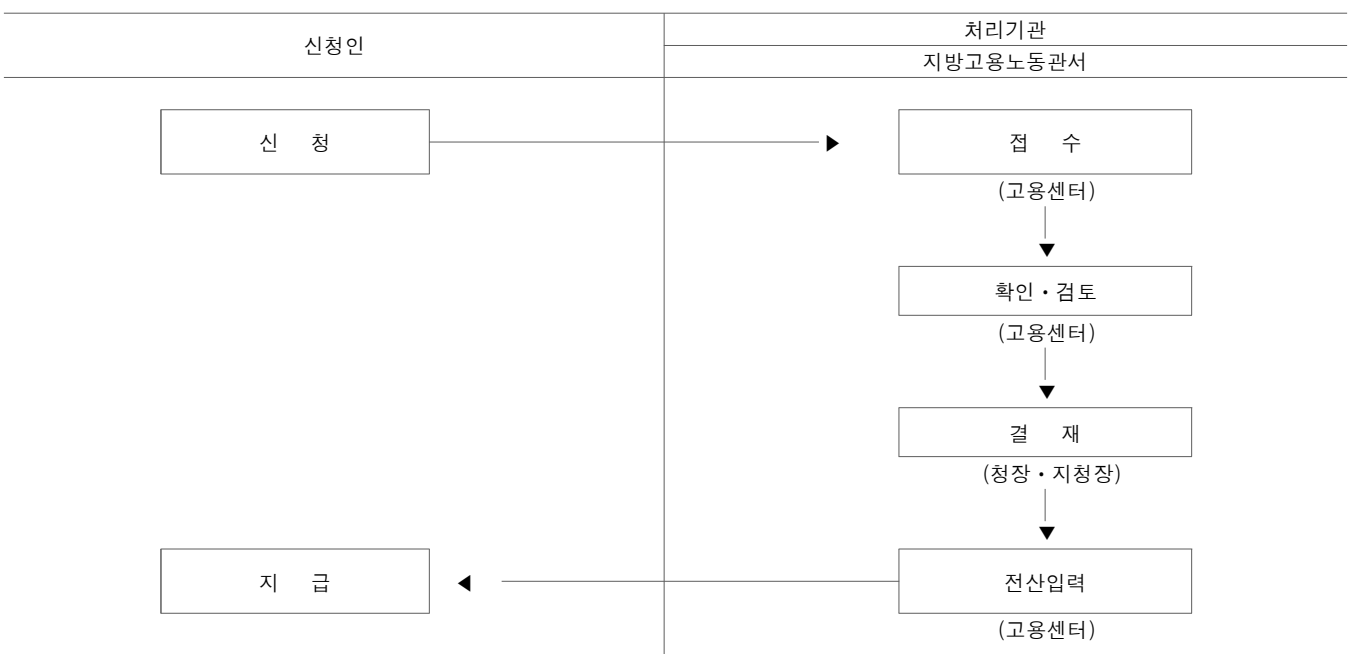
배우자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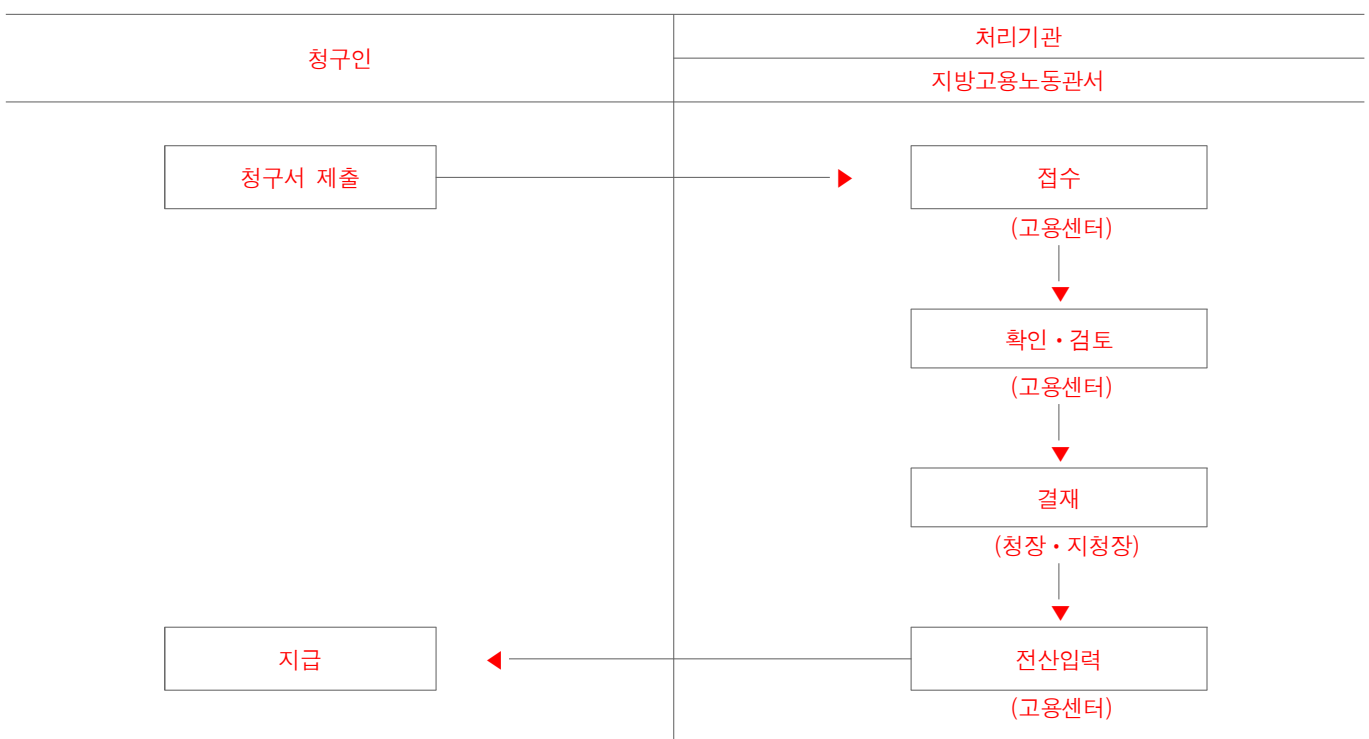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청구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상병급여 신청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청구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취직 사업장 (사업에 고용된 경우)	④ 사업장명		⑤ 대표자 성명		
	⑥ 소재지		(전화번호:)		
	⑦ 취직일	⑧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⑨ 월평균 임금액	원	
	⑩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⑪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 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	☐ 영업을 양도·양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합병·분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 해당 없음		
자영업 사업장 (자영업을 하는 경우)	⑫ 사업장명		⑬ 대표자 성명		
	⑭ 소재지		(전화번호:)		
	⑮ 사업 시작일	⑯ 사업자등록번호			
	⑰ 업종				
지급계좌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 사유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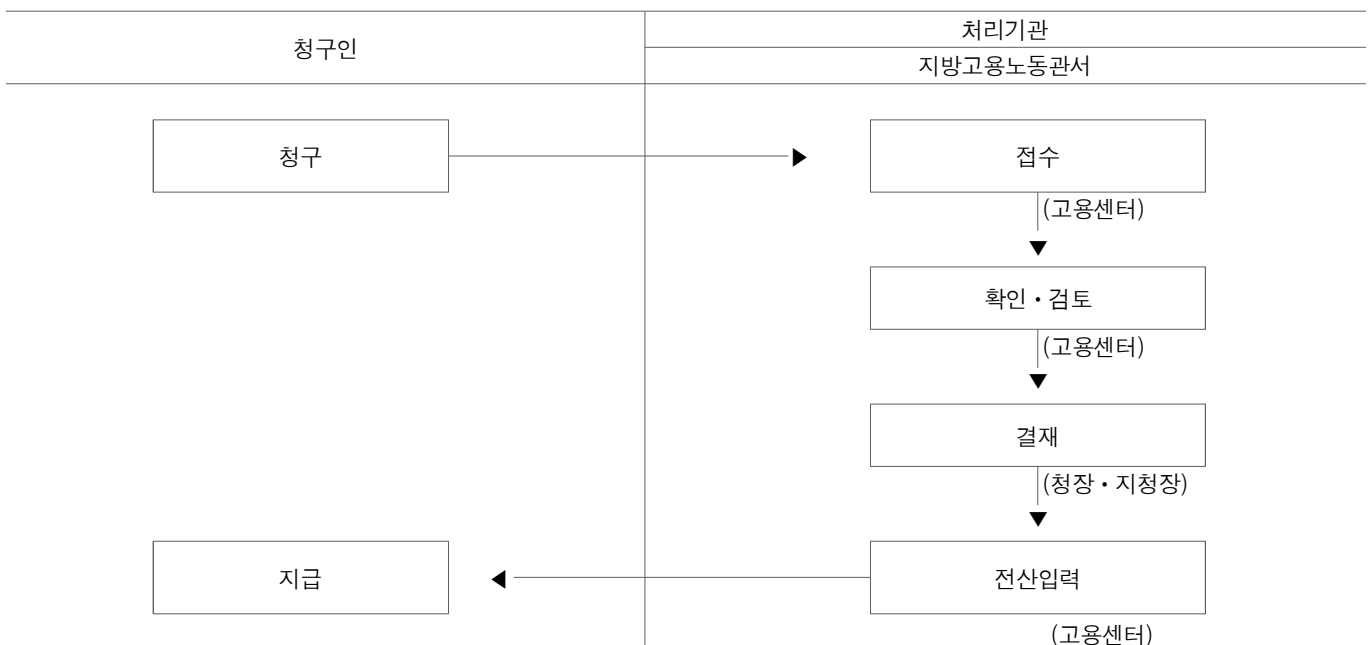
공지사항

1.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⑪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3. ⑫ ~ ⑰란은 재취직하지 않고 청구인 자신이 자영업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재취직한 사업장으로부터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 서면 등으로 처음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재취업 후 1년간 받은 월평균 임금(세금 등 각종 공제 전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업 당시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⑪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재취직한 사업장과 ⑩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8. ⑮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9.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65세 이상인 사람 중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완화된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른 지급제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처리절차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방문 사업장	명 칭	소재지(전화번호)	구인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	사업장확인 (서명 또는 인)	
교통편 이용 명세(광역구직활동 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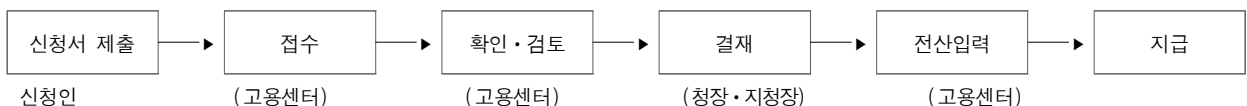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광역구직 활동비 지급결정사항		산출명세						
			지급액						
	미지급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주비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청구인 (수급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주 전 주소				
	이주 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취직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취업일 (수강개시일)	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이주한 일자				이주한 거리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영수증 등 이사회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을 말합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의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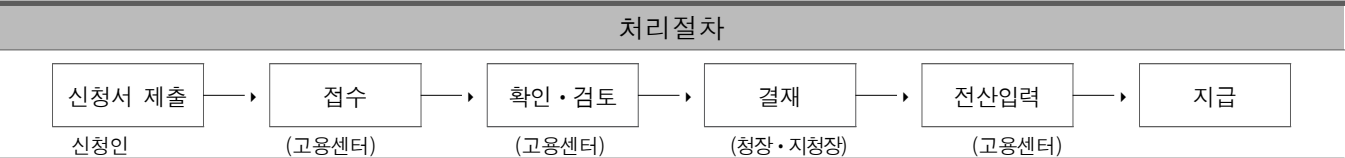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처 리	이주비 지급	산출명세							
	결정사항	지급액							
	미지급사유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승계인			
승계원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제77조의10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104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신고인 첨부서류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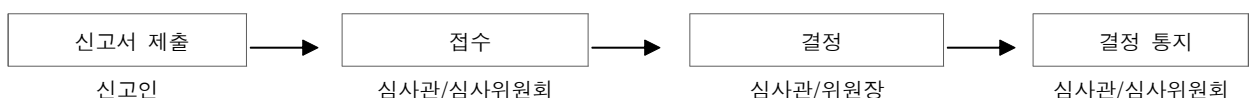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심사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3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원처분청																		
원처분내용	원처분일	년 월 일		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처분내용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제77조의10제4항·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104조의17·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제1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재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50일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피청구인	원처분청																							
원처분 내용	원처분일	20 . . .			원처분을 안 날				20 . . .															
	처분내용									원처분의 고지유무														
결정한 심사관명		결정서를 받은 날		20 . . .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 . .												
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제77조의10제4항·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가목·제104조의17제2호가목·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제125조의13·제1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이
한
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 ----- ----- ----- ----- ----- ----- ----- ----- -----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u>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u>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생 략)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 (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한 서류 사본 1부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

나.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

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 (생략)

3. (생략)

<신청절>

③ (생략)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사산휴
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
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
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지~~ 하고 남은 출산전후휴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
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
터 3개월마다 신청. 다만,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날
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
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
부터 제5항-----

----- 대체인력 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 -----
-----.

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사
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
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
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
어 계산한다.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영 제
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
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로 한다.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급자격증

2. (생략)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① (생략)

②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
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유산·사
산휴가 기간이나 대체인력 사용
또는 업무분담자 지정 -----

-.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

--(초)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서(재산세)를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류”란 ---

-----.

1. ~ 4.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 수강증명
서-----
-----.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① -----

----- 청구서를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① ----

<삭 제>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업) ① -----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 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생략)

4. (생략)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

1.·2. (현행과 같음)

3. -----

가.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영 제124조에 따른 심사청구인
의 지위승계 신고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
계 신고서로 한다. <후단 신
설>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 이 경우 심사관은 지위 승계에 관한 증명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법인등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